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3. 2. 15.(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3년도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2023년도 제1차, 제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3-03-002)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의결주문입니다. ‘(주)마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구문화방송(주)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송법 위반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3> 경과사항입니다. ‘20년 6월 24일 1차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년 4월 6일 (주)마금에 대해서 2차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4> 주요내용입니다. <가>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주)마금은 문화상품 컨설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에 대구MBC 주식 32.5%를 취득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주식을 30%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어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 처분이 가능합니다.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위반 사항입니다. 피심인은 2022년 4월 6일 방통위가 부과한 주식 처분 시정명령을 미이행하였으며, 현재까지 방통위의 승인을 얻지 않고 대구MBC의 지분을 32.5% 소유하여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피심인 의견입니다. (주)마금은 주식 매매 기관을 통하여 잠재적 인수자 등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현재 시정명령 적법 여부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 확정시까지 시정명령 이행조치 유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년 7월 2일, ‘22년 4월 6일 두 차례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3차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방송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피심인을 고발 가능합니다. (주)마금이 지속적으로 주식 처분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과 방통위의 유사 처분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다시 부과하고, 이번 시정명령 기한까지 초과지분 보유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법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주)마금의 주장은 무엇이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마금은 32.5%를 취득하였으나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에는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면 승인을 얻도록...

○ 김효재 상임위원

- 법에는 경영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와는 관계없이 30% 이상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 한상혁 위원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우리로서는 행정절차를 취하는데 위법사항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소송을 걸었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지연시키기 위함입니까?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지연의 목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우리가 그동안 세 차례 시정명령을 취한 사례가 있는 것이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 동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식처분 노력이 과연 실질적인 노력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정명령 외에 다른 조치의 가능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매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가격을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격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면 사실상 매각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 놓아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것과 의도적으로 매각하지 않고 있는 것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모두 동의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주)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3-03-003)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주)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삼라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삼라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울산방송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3> 경과사항입니다. '22년 7월 7일 (주)삼라에 대해 1차 시정명령, '22년 4월 27일 2차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 내용입니다.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주)삼라는 대기업인 “SM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울산방송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액출자자입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방송법」에 따라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 처분이 가능합니다. 시정명령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위반 사항입니다. '22년 4월 27일 시정명령을 부과한 시정명령을 미이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주식 소유 관계에 변동 없이 (주)울산방송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소속된 SM 기업집단의 대기업 지정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의 의견입니다. 장기간 침체되어온 방송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방송사의 수익창출 방법이 제한적인 현 상황에서 소유제한 위반 해소를 위한 책임을 다할 만한 매수자를 찾기 극히 어려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피심인은 두 차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3차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관계기관에 피심인 고발이 가능합니다. 피심인이 소유제한 위반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방송업계의 어려운 상황 등으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과 위원회의 유사 처분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다시 부과하고, 이번 시정명령 기한까지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주)삼라의 케이스는 아까 의결한 (주)마금과 경우가 조금 다른데 (주)삼라는 애초에 그럴 의사가 없었는데 기업이 켜져서 소유제한 규정에 걸리게 된 것이지요?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은 SBS와 케이스가 비슷한데 세밀하게 들어가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기업을 잘 경영해서 기업의 덩치를 키우니까 법을 위반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을 통해 어떻게든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삼라는 또 SBS와는 경우가 다르게 예외규정을 적용할 길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 차원이든 어느 곳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록하고,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그동안 방송 소유제한 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번 방통위 업무 계획에도 소유겸영 규제개선이 포함된 만큼 앞으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 하더라도 엄연히 지켜야 할 현행 법 제도이기 때문에 시정명령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재승인 조건 위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3-03-004)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다> “재승인 조건 위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재승인 조건 위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 채널에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을 명한다. 주식회사 채널에이는 2020년 재승인 조건에 따른 2021년도 콘텐츠 투자금액 중 미이행 금액 17,183백만 원을 2023년 말까지 집행하여 재승인 조건 위반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재승인시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 채널에이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조건 위반내용 및 피심인 의견입니다. 재승인 조건 위반내용입니다. (주)채널에이는 2020년도 부과한 재승인 조건에 따라 재승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2021년도 콘텐츠 투자금액 144,009백만 원 이상을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제출한 투자실적을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따라 검증한 결과, (주)채널에이의 '21년도 콘텐츠 투자금액은 126,826백만 원으로 투자계획 대비 약 88.1%만을 이행하여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피심인 의견입니다. 출범 이후 경쟁 심화로 인한 어려움과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콘텐츠 투자비를 늘려왔고, 2020년 재승인 사업계획서를 통해 제출한 '20~'24년도까지 콘텐츠 투자 계획은 2019년 10월에 작성됐으며, 2021년은 개국 1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콘텐츠 투자 계획을 세웠으나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드라마와 대형 기획 프로그램은 다수의 출연자 및 제작진이 모여야 하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급격히 달라진 제작환경과 안전을 심각히 고려할 수밖에 없었음을 감안해 달라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

니다. 플랫폼 간 경쟁 심화로 대형 프로그램 확보 환경이 악화됐다는 점도 2021년도 콘텐츠 투자비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며, 특히 제작비가 큰 드라마는 타 장르 대비 공급 자체가 적은 편으로, 경쟁력 있는 작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보내 왔습니다. 또한 수치적인 측면에서 2021년 콘텐츠 투자비를 계획만큼 집행하지 못했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처분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재승인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코로나19의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없었다는 피심인의 의견은 일부 인정되나, 재승인 신청서류에 기술한 사업계획은 피심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항이며, 이는 국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점과 또한 콘텐츠 투자 계획 달성에 차질을 빚은 요인으로 피심인이 제시한 코로나19의 영향, 플랫폼 간 경쟁 심화 등은 타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심인이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으며, 재승인 조건을 준수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 콘텐츠 투자 관련 재승인 조건 부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의결주문과 같이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2월 중으로 (주)채널에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올 연말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지요?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런 약속을 구두로 합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합니까?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문서는 저희가 받을 것이고 실무회의를 통해 어차피 올해 투자계획도 있고 23년까지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피심인 주장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투자 위축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상태인 점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재승인 조건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동시에 양질의 콘텐츠를 통한 자사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라도 조건에 충실한 이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역시 모두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주)조선방송의 2022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가> “(주)조선방송의 2022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주식회사 조선방송의 2022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주)조선방송 재승인 심사가 1/4분기에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자에 한해 '22년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20년 4월에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의결 및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하였으며, 올해 1월 31일에 종편·보도PP '22년도 이행실적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실적 확인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V조선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은 각 세부내용에 따라 조건은 4개 분야 7개 항목, 권고사항은 4개 분야 8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재승인 심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콘텐츠 투자비 등은 가결산 자료)만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 하였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의 항목별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등 계획 준수 조건 관련입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재승인 신청서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관련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에 대해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서에 제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의 품격제고, 선거방송의 공정성 구현과 관련된 계획 등을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취재보도 준칙과 윤리강령 등

내부 규정에 대한 실효성 제고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사내 취재보도 준칙과 윤리강령 등 내부 규정 위반사태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재승인 심사 시에 심사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거쳐 심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심의 법정제재 매년 5건 이하 등 조건 관련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특히 공정성, 객관성, 품위 유지, 방송언어 등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고,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는 해당 선거별로 2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은 1건으로 조건 이행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공정성 진단 조건 관련입니다. 방송관련 학회 등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한 연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연구보고서를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조건을 이행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과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협찬주의 상품·용역에 관한 협찬사실 조건 관련입니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효과를 다루는 경우 협찬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는 조건에 대해 2022년 월별 이행실적 점검 결과, 총 3차례에 걸쳐 협찬사실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미고지 현황 및 경위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편성위원회 목적에 맞게 운영조건 관련입니다. 편성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편성위원회를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하고 그 논의사항을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에 대해 TV조선의 편성위원회는 책임자, 실무자를 동수로 구성하여 방송편성 등과 관련된 사항 등 편성위원회 취지에 맞는 안건을 위주로 논의하는 등 조건을 이행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콘텐츠 투자계획 준수 조건 관련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하라는 조건에 대해 TV조선이 제출한 가결산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콘텐츠 투자계획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확정된 결산 자료를 통해 재승인 조건 준수 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외주제작 관련 위원회 기준 준수 조건 관련입니다.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등 위원회 제시 기준을 준수하고 매년 1월과 7월 말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한 것이라는 조건에 대해 사업자의 제출 내용에 따르면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조선방송 재승인 권고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 중 첫 번째, ‘편성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간부임명 시 종사자의견 반영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이라는 권고사항과 두 번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권고사항은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연도별 균형 있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 어린이·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등은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TV조선 재승인 권고사항 및 이행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4분기에 재승인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TV조선이 제출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2022년 이행실적 자료를 재승인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심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의견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사무처에서 꼼꼼하게 이행점검을 잘해 줘서 감사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여놓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TV조선 같은 경우 특별하게 '방송심의 법정제재 매년 5건 이하'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둔 것은 공정성과 여러 가지 공적책임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라는 당부였는데, 그 과정에 윤리강령이나 보도준칙을 잘 지켜달라는 그런 특별한 주문조건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TV조선 같은 경우 조국 前 장관 딸 자택 주거침입 관련된 사건이 2020년 10월에 발생해서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29일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준칙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부에 자율규제가 작동했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취재준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점검이행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TV조선의 前 앵커가 가짜수산업자 게이트 관련해서 부정 청탁금지법 등 여러 가지가 연루됐다는 내용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율규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봤더니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아직도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무엇을 한다' 이런 것은 자율규제 조치를 만든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자율규제 조치를 하는 것은 선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법의 판단을 보고 한다면 이것은 윤리강령이나 취재보도 준칙을 만든 취지와 어긋납니다. 우리들이 부과한 조건과도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보도 준칙, 윤리 강령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조건과 어떤 식으로 잘 이행되는지를 사무처에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현장점검하고 잘 확인하는 것은 사무처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두드러지는 큰 사건 2건만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계속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지난 2022년 11월 16일 위원회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을 할 때 본 위원이 당시에 "TV조선에서 종합편성채널과 관련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기 위하여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해서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종합편성채널 중 TV조선 연구용역 보고서를 볼 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분석해 방통위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승인 조건 이행 충실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 진단 범위 내에서 전체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의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TV조선에서 제출된 공적책임·공정성 실현과 관련한 분야의 보고서가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방통위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비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용역보고서는 특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미디어경영학회를 포함한 복수의 미디어학회에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보고서 제출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서 TV조선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TV조선에서는 올해 한국미디어경영학회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두 군데 용역을 마쳤고 이 두 군데 기관이 저희 방통위에서 부과한 방송 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이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TV조선에서 제출한 개선계획에 보면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와 같은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는 그 부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정확한 조건은 말씀드린 대로 방송 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 선정이라는 것이 조건이었고, TV조선에서 낸 향후 5년간 계획서에 나온 것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 외부기관의 공정성 진단과 관련해서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와 같은 전문 외부기관을 예시하여 적시하였고 이번에 맡긴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도 여기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와 한국방송학회 두 군데에서 의뢰해서 연구과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의 지적은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담아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TV조선에서 의뢰한 이 연구소는 2022년도 1월에 만들어진 신생 연구소이고, 미디어학회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소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용역 결과는 지적된 6개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보고서라고 보기 매우 어렵고, 이것은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전 2021년도에 제출된 보고서는 편향성과 편파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는 그런 편파성과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를 했다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내용상에서도 상당히 현재 상황과 TV조선이 방송심의에서 지적된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결과라고 보기에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적책임에 대한 영역이 지난 재승인 과정에서 지적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김창룡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왜 TV조선은 아예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번 이행조건은 저희가 부과한 권고사항과 조건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창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실무적으로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2020년 재승인 당시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사업계획의 주요 이행실적에 대해서 TV조선의 2023년 재승인 신청서에 따르면 방송인의 품격을 위한 징계제도 강화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진, 2진, 3진 아웃에 따른 재승인 기간 동안 징계사례가 0건이고, 책임자 징계와 행정지도 4회 초과 시 제작진 징계 추가가 2021년 6월에 있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1개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징계조치가 2022년 4월 7일에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진행자가 방송인의 품격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TV조선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지적과 징계제도 강화라는 이행실적,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누락됐다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역시 불이행된 것이다,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빠져 있다, 이번에 안전에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승인 신청서에 따르면 내용 중에 편성과 관련해서 보도장르는 30%를 도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닙니다. 방송의 조화로운 편성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TV조선에서 제출한 재승인 신청서에 30.33%로 특정 분야, 보도 분야가 30.33%로 도과된 것에 대한 설명은 있었습니까?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은 자신들의 편성실적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본인들이 매년 편성계획을 세우는데 그 부분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프로그램 편성의 균형성을 제고하겠다고 해서 보도 장르를 28% 유지하겠다는 보고내용이 있는데 30.33%로 도과된 것은 실적을 채웠다는 보고입니까?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실적을 채웠다는 보고입니다. 실적을 적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런데 TV조선에서는 30%를 넘지 않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TV조선의 계획은 조화로운 편성을 위해서 특히 보도에 대해서는 2020년에는 계획을 32% 이하로 잡았고,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27%가 됐고, 2021년에는 31.8%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적을 정리해 보니까 29.05%가 됐고, 2022년에는 31.60% 계획을 잡았는데 30.33%가 되었다는 실적을 적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조건이나 권고사항에 제시한 목표가 아니라 자신들이 제출한 계획대비 실적을 달성했다는 것을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제 이야기는 특정 편성에 대해서 30%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TV조선 신청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가 넘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TV조선의 입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계획대비 실적을 달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0%가 목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다시 재승인 관련한 것 중에 첫 번째 항목, 사업계획서 및 추가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에 추가 개선계획을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추가 개선계획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책임의 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이 소수의견이 됐든 지금 이 안건에는 간단하게 한 줄로만 기술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디어학회에 등록되지 않은 연구소에서 제출된 것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고서라고 보기에는 불비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인의 품격과 관련된 공적책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줄이 아니라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의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재승인 심사 시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인을 거쳐 심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이 아니고, 저는 의결할 때 이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것은 사무처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두 부분에 있어서 김 현 위원님 말씀은 연구보고서 제출 부분이 미이행됐고 1번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계획 준수도 일부 이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서상에 기재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위원장님 말씀하신 김창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인의 품격유지, 도덕성 유지 이런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언론사에 근무하는 어느 개인의 일탈행위를 그 언론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만약 국가기관이 언론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그 언론사에 근무하는 그 개인이 일탈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론사가 그 개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 법인이 소속 개인이 일탈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은 바로 '윤리규정을 당신들이 도대체 지킨 것이냐, 지키지 않은 것이냐'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가령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앵커는 방송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게 그런 사안에 취할 수 있는 조치 이외에 더 나간 조치를 취할 경우 추후 법정다툼으로 이어져서 회사가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이런 언론사뿐만 아니라 개인회사나 아니면 국가기관의 처리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봐야 할 것은 판결이 났는데도 TV조선이 그 개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옹호하고 있다, 그것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TV조선에 경고하거나 또는 재승인 때 뭔가를 문제제기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현역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결하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행정청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 근무하는 개인들이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법인이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도 법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고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여기에 지적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우리 행정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사무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행실적 제출 결과를 보고하는 이유가 임박한 재승인 심사에 제출이 돼서 재승인 심사에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 내용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다 상세한 버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이 내용에서 더 추가 확인할 부분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 그런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예를 들면 4페이지 첫 번째 주요 내용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재승인 신청서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관련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을 준수할 것”이라고 되어 했는데 ‘계획 이행 중이다’ 이렇게 가는지, 그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이 어떠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고, 불비한 점은 무엇이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한 버전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판단의 근거가 되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행 중’이라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심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아까 제가 보고드렸을 때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과 특히 공적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서 확인하고 자료를 더 보강해서 심사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심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저희들이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것들이 부과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지켜져서 특허사업자인 방송사업자가 공적책임을 다 하고 보다 발전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행점검하고 재승인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사업자에게도 전달되고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 현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거나 소수의견으로 문제제기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의견으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부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고서 말미에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효재 상임위원

- 이 보고서 이외에 세세한 보고서가 들어가는데 본문에 그것을 넣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한상혁 위원장

- 위원 한 분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했다는 것은 팩트 아닙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그것을 그동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을 적시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승인조건 관련해서 2020년도 7월 방통위에 제출된 서류가 이 서류 아닙니까? (자료를 보이며) '공적책임과 공정성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향후 5단계 계획'이 2020년 4월에 재승인될 때 3개월 안에 방통위에 제출하라고 해서 2020년 7월에 제출된 이것 기초 하에 이번 2023년 2월에 재승인 신청서 보정본을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맞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이 내용과 사무처에서 보고한 내용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송인의 품격을 위한 징계제도가 있고, 2020년 7월에 TV조선이 제출한 것에 따르면 이런 징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지적됐던 앵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2022년도에 TV조선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지가 보고되고, 그에 대해서 적절했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아예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가지 건이지 않습니까? 앵커와 취재와 관련해서, 특히 이 내용에 보면 TV조선 취재보도 준칙이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개정한 것입니다. 취재 제작 과정에서 취재원을 협박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 취재를 위해 개인의 주거지나 집무실에 무단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적시돼서 저희에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취재보도의 준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재보도 준칙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법 다툼 이전에 행정청에서는 적어도 재승인에 대한 조건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재보도 준칙을 어긴 사항이 있어서 지금 검찰에서 약식기소한 것이 본 재판으로 가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행정청은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 취재기자가 보도준칙을 어긴, 윤리강령을 어긴 사항이 있으면 청문까지 했던 것이 2020년 4월에 있었던 전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TV조선의 취재보도 준칙을 잘 이행하라고 년지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보도 준칙을 어긴 사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 보고된 내용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지 사무처의 보고서를 가지고 상임위원 간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재보도 준칙을 어겼다는 점이 분명하게 현실로 드러난 것이고, 그러면 TV조선은 보도준칙을 어긴 것이 아니다, 취재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지, 아니면 취재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확인하겠지만 적어도 2022년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적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보고서와 관련해서 복수의 외부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부과할 때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수의 미디어학회를 통해 매년 1회 공적책임·공정성 추가 진단 실시라고 2023년 2월 TV조선 재승인 신청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학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내용 역시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편향성과 편파적

이라는 점이 지적돼서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을 부과했는데 그 조건이 부과된 지난 2021년도에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학회와 굳이 달라진 연구소를 통해서 편향성과 편파적이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전혀 안 들어간 보고서가 제출된 배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적시하자는 의견이 있고,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TV조선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일수록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을 마지막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TV조선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의견마저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보고 원안에 개별 위원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취재준칙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여러 고민 끝에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 실효성 제고 필요'라는 고민 끝에 나온 문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문장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위원님들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다는 것도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서는 접수하는 것이지요. 사무처에서 보고한 것을 접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처럼 취재과정, 그리고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취재보도 준칙을 위반하거나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개인적인 일탈행위나 취재보도 준칙 위반, 윤리강령 위반행위가 있을 때 회사가 적절하게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는지 여부는 조건으로 우리가 부과를 했었고, 더해서 사업자도 그런 부분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지적한 2가지 사례, 보도와 관련해서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부정한 물품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회사가 내부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는 절차들을 지켰는지 여부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경과는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사실관계를 분명히 심사위원회에 알려 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무처에서 보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보고하되, 지금 김 현 위원님께서 특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심사위원회에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에 따라 사업자 쪽 의견과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결과 이렇다는 내용을 심사위원회에 충분히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언하신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발언 내용들이 심사위원회에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사무처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효재 상임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 법인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반드시 파악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법인이 잘못된 것이지요.

○ 한상혁 위원장

-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연구보고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조건이 왜 부과됐는지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송사업자의 보도의 편파성 문제, 공정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가 방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만약에 이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청식으로 일부 학자에게 아무런 문제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다거나 이런 식의 보고서가 제출된다면 우리가 부과한 조건이 무의미해지지요. 그런 차원의 김 현 위원님의 문제제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서에 담을 수 없겠지만 보고서가 원래 취지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김 현 위원님의 의견이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효재 상임위원

- 그것은 공개된 회의에서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든 하지 않든 전달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보고서가 객관적인지 아닌지,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를 개인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문제는 어차피 공개회의 석상에서 상임위원 중 한 분이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것은 당연히 전달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신 사무처가 이리이러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본다는 의견은 저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심사위원회에 우리 회의록이 전달됩니까?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필요하면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필요하면'이 아니라 전달되어야지요.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오늘 이행 점검에 대한 사항을 보고사항으로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전달하려고 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충분히 많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의 회의록이 심사위원회에 전달되는 것으로

정리하시지요.

○ **신승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 사항으로 해서 이 안건은 사무처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52분 폐회 】